<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시행일 : 2020년 3월 20일

3. 주요 정정사항 : 비교지수, 투자전략(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일부 변경), 펀드명칭, 모자형(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신탁계약서] : 펀드명칭, 모자형(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명칭 :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종류형 6.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Class A-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4. Class C 수익증권 : 가입자격 제한 없음 5.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6. Class C-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7. Class C-F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8. 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9. Class C-P1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10. Class C-P1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11. Class C-P2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2. Class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3. 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4. Class S-P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신 설>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 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3. Class A-G 수익증권 4. Class C 수익증권 5. Class C-e 수익증권 6. Class C-G 수익증권 7. Class C-F 수익증권 8. Class C-W 수익증권 9. Class C-P1 수익증권 10. Class C-P1e 수익증권 11. Class C-P2 수익증권 12. Class C-P2e 수익증권 13. Class S 수익증권 14. Class S-P 수익증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제 4 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삭 제>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삭 제>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삭 제>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삭 제>
6. 금리스왑거래	<삭 제>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삭 제>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삭 제>
10.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제 17 조제 2 항 각 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3. 어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삭 제>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삭 제>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	<삭 제>

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삭 제>
7.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삭 제>
8.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삭 제>
9.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삭 제>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삭 제>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6.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삭 제>
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 제>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부터 제 9 호까지 및 제 19 조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 19 조제 6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 19 조제 2 호 본문 및 제 4 호, 제 5 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삭 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 26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생 략>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의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 ③ <생 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신 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 제 3 항 내지 제 6 항과 같음>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 항 및 제 7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신 설>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생 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3.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Class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Class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6. Class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7. Class 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8. Class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9. Class C-P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0. Class C-P1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1. Class 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2. Class C-P2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3.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4. Class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4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0조(판매수수료) ① <생 략>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을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100분의 1.0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및 Class A-G 수익증권 : 100분의 0.5 이내 3.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G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P1 수익증권, Class C-P1e 수익증권, Class C-P2 수익증권, Class C-

<신 설>	P2e 수익증권, Class S 수익증권, Class S-P 수익증권 : 없음
<신 설>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S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G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C-P1 수익증권, Class C-P1e 수익증권, Class C-P2 수익증권, Class C-P2e 수익증권, Class S-P 수익증권 : 없음
<신 설>	⑤ 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를 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정하거나 차등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 9. <생 략>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미리 제 37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미리 제 37 조제 6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 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⑦ ~ ⑩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신탁계약 시행일 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서 제3조제3항 제1호의 Class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비교지수, 투자전략(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일부 변경), 펀드명칭, 모자형(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변경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요약정보	- - 비교지수 : (중소형주지수 × 47.5%) + (대형주지수 × 47.5%) + (CD 91일물 수익률 × 5%) - - - -	- 모자형, 종류형 구조로 변경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일부 변경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 54350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 5435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3250 수수료선취-온라인(A-e): D325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3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32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32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32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32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32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D3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D3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D32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D325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32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326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상동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2020.03.20 - 펀드명칭 변경(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비교지수, 투자전략(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일부 변경), 모자형(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A-e, A-G, C, C-e, C-G, C-F, C-W, C-P1, C-P1e, C-P2, C-P2e, S, S-P)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	클래스 신설 / 종류별 가입자격 등 ※ 이 투자신탁은 2020년 3월 20일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은 Class A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가입자격 제한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1e)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다. 모자형 구조		-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모자형 구조로 변경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 (1) 투자전략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 모자형 구조로 변경 (1) 투자전략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위험관리 나. 수익구조	하되 중소형주의 시가총액 대비 투자비중을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통해 (중소형주:대형주=1:1) 장기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중소형주:대형주" = 5:5 수준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비중은 시장상황 등 여건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시가 총액대별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주 : 배당수익 확보 및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 · 중형주 : 가치 및 성장성 추구 · 소형주 : 가치투자전략 구사 - 비교지수 : (중소형주지수 × 47.5%) + (대형주지수 × 47.5%) + (CD 91일물 수익률 × 5%)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은 시장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자형 구조로 변경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모자형, 종류형 구조로 변경 (2) 종류별 가입자격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과 상동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종류형 구조로 변경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후취,환매수수료 : 없음	- 선취판매수수료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A-G)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운용보수 : 0.646 - 판매보수 : 0.506 - 신탁보수 : 0.030 - 일반사무 : 0.015	- 운용보수 (A, A-e, A-G, C, C-e, C-G, C-F, C-W, C-P1, C-P1e, C-P2, C-P2e, S, S-P) : 0.646 - 판매보수 : A(0.506), A-e(0.253), A-G(0.303), C(1.00), C-e(0.50), C-G(0.550), C-F(0.05), C-W(0.00), C-P1(0.30), C-P1e(0.15), C-P2(0.40), C-P2e(0.20), S(0.25), S-P(0.125) - 신탁보수 (A, A-e, A-G, C, C-e, C-G, C-F, C-W, C-P1, C-P1e, C-P2, C-P2e, S, S-P) : 0.030 - 일반사무 (A, A-e, A-G, C, C-e, C-G, C-F, C-W, C-P1, C-P1e, C-P2, C-P2e, S, S-P) : 0.015 -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나. 수시공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변경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힘찬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 - 비교지수 : (중소형주지수 × 47.5%) + (대형주지수 × 47.5%) + (CD 91일물 수익률 × 5%) - - - -	- 모자형, 종류형 구조로 변경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일부 변경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끝>.